

서울서부지방법원 2018. 7. 19 선고 2017가단22608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1. C

2. D

변론 종결 2018. 6. 12

판결 선고 2018. 7. 19

주 문

1. 원고들에게, 피고 C은 38/48지분에 관하여, 피고 D은 10/48지분에 관하여 서울은평구 E 대 122㎡ 중 별지 도면 표시 2, 15, 16, 17, 18, 19, 8, 7, 6, 5, 4, 3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벽과 방 11㎡ 를 각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원고들 공유인 서울 은평구 E 대 122㎡ 지상 일부에 피고들 공유(피고 C 38/48지분, 피고 D 10/48지분)의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, 침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, 15, 16, 17, 18, 19, 8, 7, 6, 5, 4, 3,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ㄴ)부분 11㎡과 같다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하고 그 지상에 있는 피고들 공유 건물 부분을 '이 사건 건물부분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피고 C : 재판상 자백(민사소송법 제288조),

피고 D : 다툼 없는 사실, 갑1, 2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 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

있으므로, 원고들에게, 피고 C은 38/48지분에 관하여, 피고 D 10/48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, 그 점유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이에 대하여 피고 D은,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들 소유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 부터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였고 G의 소유이던 그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후에 소유권자가 달라졌으므로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소유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나, 을나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또한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부분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도 사용될 수 없는 용도여서 원고들의 청구가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,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 D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

3.결 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하효진

별지